

24

고문은 계속되고 있다!

-고문 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0.1	15

때: 1994년 6월 8일

곳: 연세대학교 교정 곳곳

연세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

대학원 학생회

정외과 학생회

자유고양

KUSA

연세 민주동문회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그대여 지금은 몇 시인가

김창규

내가 들어와 있는
문을 밖에서 잠궈 버린 방에서
답답하여 시간을 물는다

알 수 없는 시간대에
파리똥 같은 불빛 아래서
고문당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얼굴
그대는 지금 잠자고 있는가

창살 밖으로 보이는
창백한 별빛을 어림잡아

오늘이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달력을 보지 못해도
벽에 그려논 그림으로
하나 둘 시간을 재보기도 한다

내일 또 내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나날들 속에
그대 얼굴 떠올리며
지금은 몇 시인가 물고 싶다.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동문을 기억하는 자리 만들며

연세인 여러분!

과거 우리는 군사정권의 고문과 공포를 갖게 하는 공포에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독재에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지난 시기의 정부 때보다는 양은 줄었지만, 육체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교묘한 방법의 정신적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단지 지금 물리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거의 고문을 당한 기억으로 그 상처로 한 인간이라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고문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고문은 일시적이지만, 고문 피해자의 삶 속에 늘 어두운 공포의 기억으로 자리잡아 계속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문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80년대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두 학생은 경찰과 감옥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문국진, 김복영-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악령의 세월에 빼앗겨 버린 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들 가족이 당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문을 인류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고문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도 이미 6공 때부터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관련 발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커녕 고문의 근절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고문 피해자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국진, 김복영을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이요, 그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이요,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고문은 정부에서 저절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고문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때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우리 자신이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세인 여러분!

오늘 하루는 고문 피해로 인해 청춘의 꿈을 빼앗긴 두 동문을 생각하면서 학교 곳곳에서 전개되는 모금과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우리의 고문 근절의 의지를, 그리고 두 동문과 그 가족이 조그만 힘이라도 얻을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6월 8일은 연세인이 “고문 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1994년 6월 8일

연세 총학생회 / 총여학생회 / 각 단과대 학생회

대학원 학생회 / 정외과 학생회 / 자유교양 / KUSA

연세민주동문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문국진

1. 약력

- 1960년 3월 16일 서울출생. 2남 중 둘째
1979년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 입학
1980. 10월경: 반공법 위반으로 서대문 경찰서 구속, 1년 형 2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3개월 만에 출소
1983~85년 도서출판 화다 편집장
1986년 3월 25일 보임·다산 사건으로 전국 지명 수배
1986. 10. 27: 청량리 경찰서 자수 구속, 정신질환 발병
1988. 9. 10: 결혼
1989. 8: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9. 10. 30~11. 27: 동서문화사 3개월 다니던 중 재발, 증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재입원.
1990. 2. 28: 딸 해인이 태어남
1993. 6. 26: 고대 구로병원 입원 (1994. 4월 12일까지)
저서로 『반제반파소운동론』과 『혁명이론의 빙곤』이 있음



2. 사건개요

1) 1980년 반공법 위반 사건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10월경 서대문 시범 아파트에 살 때 새벽에 서대문 경찰서 형사 3명이 들이닥쳐 연해해 갔다. 이때 연대 동기생인 곽영진도 함께 들어가 조사받고 나왔다.

곧바로 부모가 따라 갔으나 면회는 못했고,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알아봤더니 연대 학생 한 명의 프락치 활동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서대문경찰서에서 프락치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프락치가 되느니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거절하였다.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된 후 형사가 집에 와서 5~6권의 책을 압수해 갔는데, 그중 문국진이 연대도서관에서 대출한 교수 전용의 사회과학 책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그후 1달 만에 그의 부모는 서대문경찰서에서 그를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때 문국진은 극히 초췌한 얼굴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서대문경찰서에 끌려가자마자 서대문서 뒷골목 치안본부(현재 경찰청) 대공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다. 수사관들은 3일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를 발가벗기고 쌀가마니로 들들 말은 채 무진장 때리기만 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맞은 후 저녁에 감방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마를 받고 새벽이 되면 고문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골방으로 끌려가 무조건 맞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가하여 그는 여러 차례 혼절하였고, 또, 정강이에 나무막대기를 끼워놓고는 무릎을 질겅질겅 밟는 고문을 가하면서 수사관들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대라고 강요하였다.

그는 이사건으로 1981년 1월 15일,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3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연세대 동기생들에 말에 의하면 구속 사건이 있은 뒤 술을 마시면 그전과 달리 주사가 무척 심했고,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고 때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날이 끊으면 온 몸이 쑤시고 특히 무릎이 심하게 저리다고 호소한다.

2)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986년 3월 25일 새벽에 문국진씨와 함께 활동한 고경대, 박성인, 김상복, 김해중, 이범, 고성국 등이 연행된 것을 비롯하여 2일간에 걸쳐 총 14명이 구속되고 14명이 수배되는 조직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후 2주일 후인 1986년 4월 15일자로 각 신문에 치안본부 명의로 ‘보임·다산사건’ 발표되고, 백원담, 문국진이 전국에 지명수배되었다.(백원담은 1987년 대선직후 수배해제되었고, 문국진은 1994년 현재까지 복권 이 되지 않은 상태다).

86년 3월 25일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그의 부모들에게 매일같이 청량리 경찰서 형사 10명이 집에 와서 문국진을 잡아오라고 협박했고, 책을 10권 가량 뒤져갔다. 그들은 문국진씨의 부친이 수색영장을 보이라고 하자 세 번 만에 영장을 가져왔다.

경찰이 집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하였고,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에딘버러 옷가게로 경찰이 와서 청량리 경찰서로 부모를 데려가 “1달에 얼마씩 돈 대주나”며 육박지르며 수첩을 뺏었다 돌려주기도 하였다. 대공과 형사 10명 가량이 하루종일 진치고 앓아 영업을 못하게 했으며 가게를 빼라고 주인에게 압력을 넣었다.

또한 청량리 경찰서 계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을 자수시키면 학교 복학도 시켜주고 곧바로 내보내 주겠다며 계속 회유하며, 문국진씨가 자수한 날 새벽까지도 그 상태로 포위하고 있었다.

문국진씨는 부친에서 월세방을 얻어 7개월 간 수배생활을 하던 중 주인집 아저씨의 신고와 조여오는 검거망에 쫓겨 이를 도망 다니다 10월 27일경 새벽에 집으로 전화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에 그의 부모는 경찰이 잠시 비운 사이에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경찰서 대공2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형사들이 닥쳐 청량리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3) 청량리경찰서에서 발병하기까지 42일간의 과정(1986. 10. 27~1986. 12. 12)

청량리 경찰서(사복 착용: 1986. 10. 27~11. 22)

처음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백원담이 어디 있는지 대라,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부친에 살던 집이 어디 있는지 대라’는 내용의 조사를 하였다.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와 마치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고문당하는 것 같아 괴로웠으며, 자신도 고문 당할까봐 괴로웠다고 한다.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담당 형사 김낙현 외에도 여러 명의 형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구속 직후 어느날 밤에 목소리가 굵고 험악하게 생긴 형사가 취조할 때 어떤 운동 이론을 보여주면서 “너도 정부에 협조하는 이론을 써라” 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너 오늘 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문국진씨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으며, 그날 밤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일이 끝나자 마자 옆방에서 땅딸시계가 울렸는데 9시인 것 같았다. 또한 김일성 사망의 호외 신문을 보여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하루 종일 물어 보았으며, 그 당시 그는 청량리

경찰서에서 조작한 신문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 당시 다른 사건으로 청량리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었던 외국어대학교 4학년이었던 장이환 씨의 말에 의하면 본인도 조사받을 때 “너 오늘 가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 공포감은 상당한 것이었으며, 또한 청량리 경찰서에는 전기봉이 있었는데 그러한 고문도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했다고 하였다.

또한 장이환 씨의 말에 의하면 청량리 유치장에서 문국진이 교과서 크기의 시커멓고 조악한 표지의 북한에서 나온 선전용 책자를 갖고 있었는데,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준 것으로 그 책자의 내용을 자술서로 쓰게 하면서 사상적 혼란과 정신적 압박을 준 듯 하다고 하였다.

이후 3일만에 취조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이놈은 괜찮은 놈, 저놈은 안 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 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말을 하며 경찰, 전경들을 감시하였다. 이런 모습을 본 전경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여러 명이 달려들어 구둣발로 구타했다.

그 상태로 보름쯤 있다가 대공과 과장의 지시로 경희대 병원에 김낙현과 함께 갔었으나, 의사는 별 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보냈다.

이때 부모에게 경찰들은 문국진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왔다고 했으며, 그후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건대사건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했다.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독방 유치장으로 옮겨졌고, 독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다.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다.

성동구치소(죄수복 착용: 1986. 11. 22 ~ 12. 12 : 20일)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했다. 창살을 부수고 자신이 누운 둥을 받아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쏟아버리면서 난동을 피우자 여러 사람이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이불에다 주전자물을 쏟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해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찼으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렸으며, 독방에다 가두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칸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불잡고 서 있었다.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독방)에 끌려가 온 몸과 손발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먼 보자기를 뒤집어 씌어 놓았으며, 뒤통수에 눕지도, 앉지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 상태로 문국진은 4일을 조그리고 갇혀서 누운 채로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후로 다시 독방에 갔으며,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깼다는 이야기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가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질렀다. 부모가 계속해서 복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며, 이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 찾아갔으며,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월 12일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감정유치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다.

중곡동 국립정신병원(1986. 12. 12 ~ 1987. 2. 28)

중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취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정신감정유치를 위해 담당 의사 최용성 씨에게 의뢰되었으며, 그외 청량리 경찰서에 있었던 일반수 1명도 같이 중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다.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 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1987년 3월 4일자로 기소유예로 출소하였다.

3. 출소 이후의 경과

1987년 8월 말경 발병한 후 처음으로 현재의 처 윤연옥이 문국진을 만났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며 한 장소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였다. 당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서 출퇴근하듯이 하루를 병원에서 헤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외래치료인 낮병동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신의 병실생활을 한번 보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입원했다. 그날 윤연옥씨는 담당 의사 최용성을 처음 보았는데, 최용성 씨는 문국진 씨가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을 할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경을 말하였다.

이후로 한해에 한번씩 재발이 되었는데, 1989년 입원할 때는 이를 동안 잠을 안 잔 상태로 당시 다니던 출판사에 출근했으며, 퇴근 후 밤에는 책상에 앉아 손목시계만을 들여다 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난폭해져 쿵쿵거리며 방을 돌아다니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어떤 얘길 해달라고 하며 잠을 못자게 하였다.

1990년 입원할 때는 입원하기 1주일 전쯤 회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 “이혼하자”고 하여 밤에 들어온 문국진에게 아내가 이혼의 이유를 묻자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용한 카페로 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건 나다. 내가 왜 너를 안기부에 보고하겠는가”라고 하자 눈알을 둘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상태에서도 진실은 통했는지 문국진은 이혼얘기는 거두겠다고 했다. 이후 전화가 도청되어 있으니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했으며,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장소를 옮기며 불안해 하였다(경찰이 미행한다고 생각함).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목을 졸라서 부인은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안고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와 피했다. 문국진은 다음 날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도 한동안 여기가 “치안본부냐! 나를 고문시킬 거냐!”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

4. 최근의 상태

93년 6월에 병이 재발하여 고대구로병원에 입원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현재 구로병원에서 크로자핀이라는 새로이 개발된 정신치료 약을 쓰고 있으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94년 4월 12일 퇴원하였고, 현재는 통원 치료 중이다.

김복영

1. 신상관계

1965년 1월 3일 경남 창녕에서 출생 3남2녀 중
셋째로 출생

창녕의 국민학교

--> 서울의 국민학교 --> 창녕의 국민학교
마산고(1학년 1학기만 다님)

수원고에서 졸업

1984년 연세대학교 정외과 입학
써클 KUSA에 가입하여 활동함.



2. 학교생활과 여행

ㄱ. 84년 당시 그가 가입한 써클 KUSA에서는 운동지향적 선배들과 그렇지 않은 선배들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김복영은 전자 쪽 흐름에 속하게 되었다. 별로 두드러지게 활동한 것은 없지만, 써클 동료의 말에 따르면, “아주 똑똑하고”, 외모나 마음이 “깨끗”했으며, 특히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한다. 84년 7월에 농촌활동에 참가하였고, 85년에서 86년에 걸쳐 수많은 시위에 참여, 85년 후반기부터 86년 4월까지, 이례적으로 8회에 걸쳐 여행되는 일이 있었다. 이중 약 3회는 불심검문에 의한 것이어서 체포에 대한 강박증을 보였다.

ㄴ. 86년 4월 19일 시위에 참석 중 서울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다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어 3개월간 구치소에서 생활하였다. (86.4-7월)

ㄷ. 그는 여행될 당시 뒷목을 잡혀 끌려 갔는데, 이후부터 목이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같이 여행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여행 당시 집단구타를 당했고, 시경에서도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ㄹ. 구치소에서 생활 중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가도 거의 말이 없었지만, 가족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뚉물을 펴부어 독방에 갇힌 적도 있었다. 그는 구치소 생활 도중 자신의 사상을 지키느라 정신적으로 고통이 커다고 석방 후 친구들에게 본인이 직접 말하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동료들은 전한다.

3. 석방 이후

ㄱ. 구속 당시 성적 문제로 휴학계를 부친이 냈고, 이로 인해 석방 직후 군 징집 문제가 있어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가출하여 약 한달간 써클 동료의 집에서 생활함. 어느날 전화하러 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왔는데, 그의 말로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형사가 자기를 감시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고 함.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음.

ㄴ. 집과는 일체 연락을 끊음. 집에서는 3차 소집영장이 나오도록 소식이 없자 행불/주민등록 말소 처리함.

ㄷ. 그해 가을 무렵, 군 징집을 피해 있던 친구와 함께 서울 봉천동 보라매 공원 후문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서 생활. 그러나, 거기서도 집 주인이 형사였다고 하면서 자취방에서 도망나옴.

ㄹ. 그해 12월경 수원 집으로 귀가함.

귀가하여 이후 집에만 들어박혀 있었음. 형사들이 집을 도청하고 있다고 하면서 집안식구들

과도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누나와 필담으로만 대화함. 어느날 남동생과 함께 자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는 일도 생김.

ㅁ. 87년 3월 부산으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음, 결과는 면제였음. (부친의 말로는 아는 사람이 있어 시력이 나쁜 것으로 면제를 받게 했다 함)

ㅂ. 이후 친구들과의 접촉도 없이 집에만 있었음.

ㅅ. 다시 87년 7월경 가출하였음. 집에서는 소식이 끊기자 신문에 찾는 광고를 냄. 가출 후 한 달 뒤에 돌아와서는 지리산으로 무전여행을 하고 왔다고 함. (89년부터 약을 2개월간 끊고 일기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에는 나름대로 투병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범도 잡아먹었다고 적혀 있음). 그후 상당히 표정이 밝아져서 식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가 다시 어두워짐.

ㅇ. 88년 2월 첫 입원: 2월 16일, 술먹고 돌아와서 작은 칼로 식구들을 위협함-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사의 말로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중세인데, 병원에 너무 늦게 왔다고 함.

ㅈ. 88년 6월 퇴원: 이후 약 1년간 약만 타다 먹고 집에서 식물인간처럼 있었음.

ㅊ. 89년 8월: 본인이 약을 끊고 병을 이겨내겠다고 하여 친구들과 연락, 만나고, 복학을 고려하고, 약 2개월간 신문배달을 함.

ㅋ. 89년 10월경: 병이 재발하여 집안에만 있다가 11월 1일 용인정신병원에 재입원함.

ㅍ. 90년 5월 퇴원하여 용인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맡았던 의사가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김에 따라 강남성심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타다 먹음. 지하에 세든 사람의 아이를 칼로 위협하는 일이 생김.

ㅌ. 91년 2월 세번째 입원: 강남성심병원에서 전기치료만도 약 20차례를 받음.

ㅎ. 겉보기로는 정상이 된 듯하여 6월 26일 퇴원함.

가. 주위의 권유로 기(氣)치료를 한다며 스님이 있는 안양 관음사에 갔으나, 1주일도 안되어 재발되어 절에서 나옴.

나. 이후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글쓰기와 독서를 즐김. 그러다가 재발되어 두드러지게 폭력적인 중상을 보여 91년 8월 2일 끓어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시킴.

다. 이 일로 부친은 충격을 먹어 직장을 퇴직하고 낙향함.

라. 91년 10월 10일: 끓어서 용인정신병원에서 서울국립정신병원으로 옮김.

마. 91년 12월경 병원에서 외박나와서 집에 있던 중 자살을 기도함-난간에 개줄을 묶고 목을 매었으나 줄이 끊어져서 살았다고 이후 본인이 밀함.

바. 92년 4월 퇴원, 상태가 호전되었음, 서울국립정신병원 낮병동에 다니면서 문예반과 편집활동을 하였음.

사. 92년 7월 가출하여 1달 뒤에 돌아옴.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인천에서 조선일보 신문배달을 했다고 함.

아. 본인이 스스로 재입원하겠다고 하여 92년 9월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홍천의 기도원에도 가 있다가 92년 11월 16일 서울국립정신병원으로 옮김. 이때부터 점차 기억력을 상실함.

자. 93년 봄에 부친이 다시 수원으로 올라오심.

차. 93년 6월 퇴원하였으나, 다시 8월 재입원하였고, 독서도, 글쓰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카. 93년 10월 5일 퇴원하여 약을 끊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굿을 함. 다소 폐활해서 식구들과 대화를 갖기도 함.

파. 93년 10월 16일 용인정신병원에 재입원하여 언제 퇴원하였고, 언제 대구 팔공산에 가서 치료받을려고 했는가를 그리고 현재는?(의사의 말로는 심한 분열증 중세라고 함)

4. 증세

초기에는 감시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음.

부모도 자기 자식처럼 보이고, 타임머신을 타고 전생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함.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사람들을 몰살시키라고 조종하고 있다고 하기도 함.

아버지와 남동생을 보고 안기부 프락치다고 하기도 하였음.

기름 보일러 소리가 사람이 비명지르는 것처럼 들린다고 환청을 호소함.

병원에서는 고기도 안 먹었는데, 사람을 갑아서 고은 물이라고 함.

지금은 완전히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지내고 있음.

<김복영씨 병원 치료 상황>

86. 12.	첫 발병	투약
87. 7.	가출	
88. 2. 16-6월	용인정신병원	우울증, 정신분열증. 술먹고 칼로 식구들을 위협
89. 10	재발	
89. 11. 1-90. 5.	용인정신병원	
91. 2-6. 26	강남성심병원	전기치료만 20여회 받음
91. 8. 2	용인정신병원	치료증 병원을 읊김
91. 10. 10	서울국립정신병원	
91. 12.		병원에서 외박나와 자살을 기도함
92. 4.	퇴원	국립정신병원에 통원 치료
92. 7.	가출	
92. 9.	용인정신병원	
92. 11. 8-15	강원도 홍천 기도원	
92. 11. 16-93. 6.	서울국립정신병원	기억력도 상실해감
93. 8-10. 5	서울국립정신병원	독서와 글쓰기를 완전히 할 수 없게 됨
93. 10. 16-94. 1	용인정신병원	

<자료- 김복영씨의 일기 중에서>

* 1991. 10. 27. 日

.....멈추어지지 않았음에 새삼 치를 떨며, 살아있음으로 치욕으로 생각하게 한다. 너희들은 항상 나의 뇌수에 칼침을 꽂고 나의 꿈에 피비린내와 다급하게 쫓기는 자의 초조함을 맛보게 하는 멋진 기술을 이전시켜 놓았구나. 그렇다. 나는 너희들의 올타리 안에 갇혀지내는 짐승처럼 참혹한 처지가 되었지만, 아직 생명이 불어 있기에 너희들과 같은 무리들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투사가 될 수도 있으리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조작하는 기계의 부속품이 되거나 이용물이 되는 것을 나 스스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바보로 만드는 미몽에서 깨어나 한시라도 내가 혁명과 반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꼭두각시처럼 어설픈 장단에 춤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오산이다.

* 1992. 1. 25. 金

너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안 해서인지 바깥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도무지 낯설기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여기 병원생활도 사회의 조그만 일부분인 만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사람들인 만큼 그동안의 생활에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작년 한해는 그야말로 병원생활이 전부이다시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3분의 2 이상을 병원에서 보낸 것이다. 그 속에는 많은 내포된 함의(含意)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작년 한해동안 나의 살아온 여정이 가슴속 깊은 회포로 다가올 때 때문이다. 잘 기억나지도 않는 대림동 강남성심병원에의 입원, 그속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금은 나의 뇌리 속에 아련히 떠오를 뿐이다. 그리고 퇴원, 그 꿈에도 그리던 퇴원은 나에게 강요된(?) 현실과 부닥쳐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과 고통스러움으로 얼룩져야 했고 그것은 절간에서 입산수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기간도 잠시, 또 다른 시간의 여행 속으로 달려가야 하는 나의 삶은 그때도 고달팠다. 그리고 집에서 한달간의 독서와 반성 새로운 증오와 반목, 가족에 대한 불신, 증오 원한섞인 용어리진 감정은 마침내 폭력적으로 분출되고야 말았고 나는 상처 입은 짐승이 되어 다시금 용인정신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가족으로부터 벼림받은 고통받는 한 노동자로부터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그외에도 짧았지만 실습생과의 관념적인 사랑이 짙기도 했었다. 두달간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퇴원, 다시 죽음에의 유혹은 나의 가슴에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엔 자살미수로 끝난 내 인생은 병원생활의 연속일 수 밖에 없었고 아직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물론 또 퇴원할 것이다.

아! 이 고통의 뿌리는 어디이며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고통과 왜곡된 인생과 잘못 방향 잡혀진 방향타로 인해 나의 정신과 영혼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그 참혹한 폐허 위에는 향그려운 꽃 한송이조차 피지 않을 것이다. 아!----- 나는 어디로 가는가?

* 92. 1. 27

이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행동했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그 지독한 감시와 지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마치 그런 것이 언제 있었느냐는 아무 걱정없이 행동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젯밤에는 매우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매일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지배하고 조종하기라도 하는 양 마치 어떤 계기성을 띠고 복잡한 내용을
이루며 마치 완결된 하나의 소설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몇달전의 그때처럼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찾아올려는 것인지 날 모르겠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큰 문제성이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래왔던가. 그러나 지금에 와서 빼늦게 지금에 와서야 그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 92. 4. 1. 水

이제까지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 리가 있을까? 신·성·Telepathy·목소리. 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나는 진짜 정신병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외부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가짜 정신병자이다.

이제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꿈같은 일들이 정말 거짓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정신병자일까? 아직도 나는 내가 정신병자라는 참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느낌, 표정들, 그것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나를 닮은 모습들, 어찌 그것이 하룻밤의 꿈같이 허황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나는 이제까지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되지도 않을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인격은 황폐해지고, 무엇 하나 마음에 잡히는 것이 없는 지금. 내가 병원생활을 한지도 어언 6개월이 되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것이(나의 과대망상이) 확신성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그것이 병이라면 나는 진짜로 문제가 큰 인간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하등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확신성을 띤 과대망상이 병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일 경우 그것은 인간으로서(나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신이 될 수 없다)의 나에게 실망과 더불어 과도한 망상만을 (그것이 망상이 아닐지라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제 나는 퇴원을 며칠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낮병원 생활을 수달간 더 해야 하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혼도 조만간 해야 할 것이다.

아 나의 청춘은 절반은 투쟁과 절망과 피비린내로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괴롭고, 괴롭고, 고독한 정신병원 생활로 물들여졌다. 애초에 그 꿈많던 어린 시절 내가 되지도 않을 과대망상에 빠져 정신병원 신세를 지리라 누가 예측을 했겠는가? 아 삶이여. 절망이여. 고독이여. 고통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로부터 영영 떠나고 싶구나.

다른 고문후유증 사례

강환웅 : 86년 중앙대 법대 입학.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로 구속 당하면서 쇠파이프, 각목에 의한 구타를 당함. 노량진경찰서와 영등포구치소에서 구타와 함께 형사가 자신의 구두 밑창을 할게 하는 등의 비열적인 고문을 당함. 89년 5월부터 구문후유증으로 3차례 정신과에 입원. 환청과 과대망상이 심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94년 2월 퇴원 이후 비교적 상태는 좋은 편임.

김종경 : 시민. 93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불법 연행되어 범행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며, 수갑을 채운 채 손목을 비틀고 뒷목을 구타함. 그후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였고, 선풍기 가재도구 등의 사물을 보고 형사인 냥 얘기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

방양균 : 전 서경원 의원 보좌관.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으로 89년 6월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 그는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군복으로 갈아입힌 후 구타와, 13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재운 채 철야심문을 하였고 총구를 이마에 대고 죽인다고 하는 등 정신적인 고문을 당함. 그는 노이로제 증상처럼 목을 꽉 누르고 숨을 못 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협심증과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당하고 있음.

서경원 : 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1980년 광주항쟁 관련으로 수배증 연행되어 40일간 잠을 자지 못한 채로 고문을 당하였고, 89년 6월 방북사건으로 안기부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고문을 당함. 현재까지 구속 수감중임.

이을호 : 전 민청련 부의장, 85년 9월 민청련 사건으로 김근태씨 등과 함께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과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함. 이러한 고문과정 속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임. 그후 매년 구속되었던 가을경만 되면 재발되어 그 동안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음.

이충섭 : 80년 성균관대 입학. 80년 교내 낙서사건으로 동대문서에 연행되었으며 81년 5월 학내 시위 주동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간 수감되었었음. 소위 '2차대전증후군'이란 정신장애에 꼬박 10년을 고생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변변히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동문들의 노력으로 연희크리닉에서 낮에는 밖에서 자유로이 생활하고, 밤에만 병원에서 자는 식의 치료를 받고 있음.

전희식 : 현 진보정당추진위 인천시 위원장. 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안기부에 연행되어 군복으로 갈아입힌 채 48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함. 기도가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치료와 우울증이란 진단서 발급받음. 현재는 고문받기 전의 건강한 상태로 몸이 회복되지는 않고 있으나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었음.

최동 : 80년 성균관대에 입학. 노동운동을 하다가 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회' 사건으로 치안본부에 연행됨. 연행 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다가 자해를 하였고, 계속된 잠안 우기 등의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함. 집행유예로 출소 후에도 계속되는 불면과 수전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자신의 피해상황을 알리려 노력하다 90년 8월 자신을 파괴시킨 국가권력의 만행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한양대에서 분신자살함. 부친은 자식의 죽음을 비관하며 밖의 출입도 삼가하다가 이듬해에 운명함.

최영미 : 80년 인천대헌공전 입학. 81년 안기부 인천분실에 끌려가 13시간 동안 지하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았음. 최영미씨는 당시 시국에 관심을 갖는 정도의 학생으로서 그 당시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가 안기부에 입수되어 있었으며 그 편지내용에 대해 안기부 요원들은 협박과 공갈을 하며 엉뚱한 혐의를 들려씌움. 8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병의 악화와 가정형편으로 인해 치료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정신과 약만 먹고 있음. 부친은 이를 비관하여 화병을 얻고 지난 86년 운명함.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¹⁾

양길승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성수의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서 따왔다는 이 문구는 영국 런던에 있는 던전(Dungeon : 토굴감옥)의 입구에 붙어 있다. 수많은 고문도구가 밀납인형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고문으로 악명을 날리던 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곳이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고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희망을 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고문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멀리 외국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고문에 대한 공포는 살아 있는 현실이다.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누구라도 기억하고 있을 이 이름들 외에도 고문피해자의 명단은 한없이 이어져 나간다. 민주화운동의 투사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들, 형사사건의 피의자들,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들 등 사회 어느 계층의 누구라도 고문이 당연시되어온 사회에서는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았었다.

사람은 희망을 버리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희망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인간됨을 말살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고문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납하고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희망을 잊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희망 대신에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문에 대해 항거하고, 고문을 추방하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여기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고문 피해를 살펴보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바로 이해하여 필요한 도움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우리사회에서 고문추방운동이 발전되어 나아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11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주관한 “고문후유증 피해보고 및 토론회”에 제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국내에는 고문 후유증에 관한 연구가 없어 이 자료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고문의 정의

1975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의학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단독적으로 또는 어떤 권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정보를 내놓게 하거나, 자백을 하게 하거나 그밖의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동시에 악의에 찬 방법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고문이라 한다.”(토교선언) (Torture is defined as the deliberate, systematic or wanton infliction of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by one or more persons acting alone or on the order of any authority, to force other person to yield information, to make a confession, or for any other reason.)

국제연합에서는 1984년에 발표한 고문과 그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 고문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어떤 개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제 삼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한 개인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때 가해자는 폭력은 대개 공권력이나 공권력처럼 인식되는 주체에 의해서 허가되었거나 적어도 확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법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고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고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김이영(한양대 의대 정신과 교수)은 고문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된 폭력을 행사한다.

둘째,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조금도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가해자는 거대한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형식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듯 하거나 최소한 합법적임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내세우는 목적은 의심되는 죄를 자백하거나,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넷째, 그런 고문의 결과는 피해자의 전 인격의 파괴로 나타난다.

다섯째, 어떤 강한 사람이라도 가해자가 작정하고만 있다면 끝까지 고문을 견뎌내는

사람은 없다.

여섯째, 고문은 피해자가 죽거나, 피해자가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들발사태로 고문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만 끝난다.

한 마디로 고문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The Breaking of Bodies and Minds, 1985)

3. 고문의 피해

고문에 의해 피해는 고문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고문피해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기까지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간의 구금상태를 지난 후이다. 따라서 고문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골절, 열상, 타박상, 고막천공, 내장파열, 신체 일부의 기능손상, 정신이상, 사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조사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고문의 후유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최초의 고문피해자 조사 보고인 Eitinger(1971)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상의 장애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227명 중 184명(81.8%)에서 뇌기능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114명(62%)이 신경기능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59명(32%)이 뇌파검사상의 이상 소견을, 75명(41%)이 뇌척수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을, 150명(82%)이 기뇌조영술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덴마크 의사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1974년에 135명의 고문피해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경 및 감각 증상을 보면 두통(36%), 난청(15%), 시각장애(14%), 알콜감당능력장애(11%), 촉각장애(6%), 어지러움증(4%)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경증상 외의 신체증상으로는 소화장애(32%), 관절통(19%), 심폐기능장애(22%), 보행장애(17%), 구타부위의 계속 통증(18%), 기타 증상(18%)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전체의 75%나 되었다.

남아메리카의 고문피해자 41명을 분석한 Allodi의 보고에 따르면 고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고문으로 구타(주먹, 둥동이, 발길, 회초리 등 사용)(40명), 전기고문(27명), 물고문(15명), 담배불, 화학약품, 뜨거운 물 고문(5명), 골절(11명), 성적 공갈(14명), 강간(5명), 금식(물과 음식)(16명), 기타(12명) 등이 있었으며, 심리적 고문으로는 말로 협박(32명), 행동으로 위협(35명), 본인 살해위협(23명), 가족 살해위협(13명), 살해

행위의 실연(12명), 기타(12명)라고 한다. 이들 고문피해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표1>

앞에서 인용한 연구보고서와 기타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김이영 교수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통증이다. 치통,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다양한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통증은 물론 고문 직후에 심하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어진 다음에도 몇 달간, 길게는 10여년까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흔한 것이 소화기 계통의 장애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설사 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혈변을 보기도 한다.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상 가슴이 답답하도 숨이 막히는 듯하여 호흡곤란을 느끼고 기침도 많이 한다. 비뇨기 계통의 증상으로 혈뇨가 나타나기도 한다. 배뇨장애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며 성기능장애로 나타나기도 한다. 배뇨장애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며 성기능 장애로 발기불능이 나타나고 여자에게서는 월경불순, 더 나아가 불임증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성생활이 원만치 못하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41명의 고문피해자가 보이는 증상>

증상의 종류	증례수
심신장애	38
두통 및 기타 통증	22
신경질	33
불면증	28
악몽, 공황	14
손떨림, 식은땀, 설사, 기운 없음	26
행동 및 성격변화	20
철수, 공격성, 충동성	13
자살기도	4
성기능장애	5
정서장애	39
우울	29
공포	12
불안	36
정신기능	
흔동, 지남력 장애	5
기억장애	12
집중장애	13
신체손상	31
화상 및 상흔	21
골절	8
증화신경--난청	5
체중 감소	10
기타(치아 결손, 힘줄 파손 등)	11

둘째, 정신적인 후유증은 아주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이 기억장애, 인지 기능의 장애, 정신집중의 장애 및 감정 조절의 장애이다. 쉽게 흥분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포와 불안도 아주 흔하다. 지적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며, 흔하지는 않지만 망상과 환청 등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섬망상태에 있을 때도 있다. 성격 변화가 심해져 외부환경과 접촉을 피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아주 힘들게 되기도 한다.

인격의 파탄이 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극도로 약화된다.

우리나라에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개인적으로 몇몇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문 피해자의 특성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외국보다 높고, 신경 및 감각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신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상담을 한 고문피해자들이 대부분 운동권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스스로 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려져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볼 때 정신증상을 가지고 있는 고문피해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피해자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고문피해자의 실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4. 고문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70년대초 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으로부터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 난민 중에 고문피해자가 많이 있어서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각국의 의학협회에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덴마크 의학협회의 의료진이 이 위원회의 협력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고문피해자를 돋기 위한 치료 및 재활작업이 의료의 한 분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의대병원에 고문피해자만을 위한 병실이 마련되었고, 1984년에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제적 재활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었다. 이후 이와 비슷한 기구가 벨기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칠레에 설립되어 현재는 20개 가 넘는 치료 재활시설이 만들어졌다. 1984년 이후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제3차 국제회의는 1991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70여개 국가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도 고문피해자 서승씨와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와 필자가 참석하여 발표를 한 바 있다.

외국의 치료 및 재활 경험에 따르면 처음 덴마크와 미국의 치료센터가 대학병원의 정신과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였다가 많은 부작용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고문피해자들은 자신을 고문한 가해자들이 가장 잘 조직된 거대한 기구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장 조직되고 거대한 기구를 가진 기관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치료 및 재활 기관들은 피해자들이 안전함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의 가정집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와 그에 따른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장애 또는 파탄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위는 이 치료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감금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 입원은 가능한 한 피한다고 한다.

고문피해자의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문피해자가 상실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치료를 맡은 사람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다른 어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고문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문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복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잃어버리게 되어 치료과정에 있어서도 치료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치료자 간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자 요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고문 당시에는 바로 고통을 주었던 것이었던)을 통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피해자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동료인 같은 고문피해자들과의 집단적인 치료방법이 치료의 과정에 중요하다. 일단 치료를 할 만큼의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정도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고문받은 사실을 폭로하면 보복당한다는 협박과 서약 때문에 폭로하는 것 자체가 고문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치료가 어렵게 한다.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또 다른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이다. 고문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가족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족 속에서 가지고 있던 원래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에는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고문이 불러온 온가족이 같이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의 넓게 보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문피해자의 정신 병리학*

이 글은 고문으로 인한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목적으로 고문 상태를 정신병리학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로렌스 하트만 박사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실례에서 보이듯이, 고문 이후 후유증으로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성 장애(DSM-III)' 현상이 임상결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드러났다. 주요 증상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 불안, 공포, 악몽, 반응에 대한 다소간의 마비, 흥미 상실, 과다경계증, 수면장애, 삶에 대한 죄의식 등이다. 고문당한 사람 중에는 정신과나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고문에 대한 경험이 주요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의 상태로 발전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 본인이나 사람들이 외상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칠레의 리라와 웨인스타인은 고문으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업무능력과 일상 생활에서, 특히 대인관계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의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고문후유증으로서 나타나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에 극심한 인성의 변화를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내가 조사했던 환자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환자들의 인성과 행동들의 전반적인 변화는 밴질라프와 바이어가 주장했던 나치 체제하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겪은 인성의 역행적 변화와 매우 유사하다. 고문후유증 환자들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피곤한 증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며 집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우울증 증세를 띠는 만성적인 외상후 증후를 보인다. 환자들 중에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전반적인 기능저하 현상, 특히 정서나 감정 부분에서의 저하와 더불어 인성이 변화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고문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정신병이나 本 기질의 장애와 같은 성격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아메리카의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상태(stressful), 또는 독일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한계상황과 비교하여, 고문의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첫단계로 고문의 실상에 대한 현상학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고문의 실상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절대적 불균형

바이어와 부거에 의하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대칭성이다. 진정한 만남은 등등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고문 상황을 특정짓는 첫번째 특징은 고문가해자와 고문피해자 사이의 절대적 불균형 관계이다. 고문 가해자는 절대적인 힘을

* Lawrence Hartmann, MD, et al, TORTURE, (Denmark: 1993.2.)

5. 맷는 말

고문이 불러오는 인간성 파괴의 재앙은 비단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고문의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용납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문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어디엔가 고문에 비명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 합리적인 설득 대신에 고문의 강압이, 과학적인 수사 대신에 고문이라는 야만적인 폭력이, 합법적인 절차 대신에 고문이라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안 전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고문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위이다. 그러나 당위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고문없는 사회가 오지는 않는다. 고문없는 사회는 당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끌어온 분노의 가슴으로 부딪혀 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고문은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고문을 고발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고문을 들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고문피해자를 진료하였을 때에는 그를 돋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피해자에게는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이, 치료와 재활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신속하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문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을 그 고통의 높에서 끌어내어 우리의 형제자매로 바르게 안아내기 위한 노력이 외롭고 힘들게 진행되어 왔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손을 함께 잡아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는 반면 고문피해자는 거의 혹은 전적으로 어떤 방어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고문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도 없다. 고문피해자들은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눈이 가려져 있어 그 참혹한 상황과 자신 앞에 있는 고문가해자조차도 알아볼 수 없다.

고문가해자들은 고문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서 결국에는 고문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변화시키거나 그의 의지를 꺽고자 하는 것이다. 고문피해자가 가하는 위해(危害)는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해도 행해진다. “의지를 나약하게 하는 기술들은, 수감자들의 방을 비롯해서 모든 시간이나 장소를 변조·개조함으로써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의명성

고문 상황의 두번째 특징은 그 익명성이다. 고문가해자나 고문피해자 모두 고문의 순간까지 상대방을 모른다. 고문의 희생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문한 자의 이름을 모르며, 고문가해자들은 종종 고문피해자의 신원이나 정체 등에 관하여 상사들로부터 왜곡된 말을 듣고 고문피해자들을 접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 입장이 다른 대립적 집단 전체를 대표한다. 고문가해자에게 있어 고문피해자는 이미 하나의 특정한 인격체가 아니라, 적대집단을 대표하는 테러리스트 또는 공산주의자이다. 반면 고문피해자에게 있어 고문가해자는 그들의 삶을 파괴시킨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다.

고문가해자와 고문피해자의 관계에서 이처럼 인간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고문가해자에게는 폭력이 과도하게 허용되는 데 반해 고문피해자는 폭력에 대한 방어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폭력 행동의 현상학 The phenomenology of violent behavior』이라는 이전에 쓰여진 한 저서에서 보듯이, 인간의 공격성을 자극하고 발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전시 선전수단으로서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이인증(離人症) 중세이다.

이중의 압박

고문 상황을 특징짓는 세번째 요소는 이중으로 구속되어 불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즉 극한적인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신념·대의 등에 있어서) 동지들과 관련자들을 고발하든지의 끔직한 양자택일의 상황이 펼쳐진다. 전자의 경우는 극심한 고문에 못이겨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유일한 탈출구로서 자백하거나 동료를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지만 정신적인 불일치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 고문피해자는 동료를 고발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주체성을 배반한 것이 되고, 나아가 자신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었던 집단의 결속 및 유대를 배신한 것으로 낙인 찍힌다. 고발은 ‘간접적으로 고문피해자를 고문가해자의 동료로 전환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고문피해자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인 상황은 이중의 구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적대자들에게 광범위한 덫을 쐬우고 탈출을 불가하게 한 후에 싸우는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함정과 이중의 구속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가치와 동료, 그리고 삶의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포되고 지나친 고문을 당하여 방어력이 상실될 경우에, 이중의 구속이라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고문피해자는 스스로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다. 피고문자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체포되어 방어력을 상실한 채 고문을 당하고, ‘이중의 구속’의 성격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일련의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과 동료의 삶을 선택해야만 한다. 자신의 육체의 온존을 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와 신조를 선택하든지,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정치조직을 선택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고문 행위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차 있다. 고문피해자들은 대개 날조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체포·투옥되며, 또한 날조된 사실로 인하여 고문을 받게 된다. 고문 가해자들은 여러 가지 거짓 말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데, 이는 모든 고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문피해자들은 아주 어둡거나 아니면 밝은 인공조명이 있는 장소에 감금된다. 고문이 자행되는 곳은 自然光(자연광은 aletheia, 즉 진실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고문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중, 최소한 그 일부는 대부분이 허위이다. 예를 들어, 옆방에서 강간을 당하는 비명소리가 난다 해도 그것은 아내가 아니라 제삼자이거나, 아니면 조작된 소리일 경우가 있다. 고문피해자들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밀고 했다거나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납치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 역시 거짓일 경우가 많다. 고문을 당했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끔찍한 모의(模擬) 처형은 이러한 허위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사람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고문 행위의 목적은 고문피해자에게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일종의 의식 혼미 상태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진실이나 어떤 사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신적 기민함이나 자각상태, 명료한 자기 의식 등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피고문자들은 자기 자신이 테러리스트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의 임의로 작성된 조서를 읽지도 못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서명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이 조서는 그들이 유죄라는 사실과 정부의 탄압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공간의 변질

고문이 자행될 때에는 공간 및 그 공간에 있는 물체, 그리고 사물들의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고문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은폐되기 때문에 고문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또 고문실은 대개 아주 좁은 공간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조명 상태는 아주 어둡거나 아니면 인공조명을 끊임없이 비추므로 사람을 탈진케 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즉 이러한 공간에서는 사물의 본래 의미가 왜곡된다. 예를 들어 침대는 휴식을 취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지만, 고문실에서는 전기고문을 자행하는 도구로 뒤바뀐다. 물의 경우 역시 원래는 갈증을 해소하거나 세면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문실에서는 극도의 고통을 주는 재료 즉 물고문의 재료로 이용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방(房) 역시 끝없는 소음과 빛으로 가득찬 고통스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고문 과정에서는 자신의 육체마저 저주스러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육체마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므로, 육체는 자신과 무관한 것이 되고 특히 성고문을 당할 때 육체는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 원래 타인의 육체는 친근함과 따뜻함, 아름다움이나 성적 매력의 대상이지만, 고문 상황에서는 고통을 주는 아주 정교한 고문수단으로 바뀐다. 그리고 인류의 오랜 친구이자 파수꾼이었던 동물인 개마저 인간을 위협하거나 수간(獸姦)을 강요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마저 있다.

다른 맥락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Bollnow가 말했듯이 사랑의 공간이 갖는 특징은 Bollnow가 말한 생활공간 원칙의 극복,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와 무관하게 연인들이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특징을 일컬는다. 반면, 고문의 공간은 공격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고문의 공간은 격리와 협소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문자의 육체가 고문자에 의해 고문도구나 아니면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침해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문피해자와 고문가해자 사이에 만들어지는 친밀성은 일종의 사랑으로 비교되기도 하지만, 그 것은 대립적인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고양시키지만, 고문은 사랑을 극소화시키고, 사랑은 인간

을 고귀하게 만들지만 고문은 인간을 극도로 경멸시키며, 사랑은 삶이며 어느 정도는 영원한 내면의 삶이지만, 고문은 끊임없는 죽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시간의 변질

고문 시에는 시간 역시 의미가 달라진다. 일상적인 시간은 사계절의 순환과 같은 주기성을 가지며,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인 반면, 고문의 시간은 예측 불가능성과 끝이 없는 순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문의 시간이 갖고 있는 무한성(無限性)은 사랑의 전형적인 특징인 일시성(限時性, temporality)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문은 고문가해자의 계획에 따라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피고문자는 혼란을 겪게 되어 고문에 대해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없게 된다. 고문피해자들은 다음 고문이 언제 시작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고문피해자들이 가장 커다란 고통으로 느꼈던 것은, 육체적 고통 그 자체보다는 고문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 또는 고문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인간은 현재, 과거, 미래 들의 상호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는 것인데, 고문 시에는 단지 참을 수 없는 현재만이 존재한다. 미래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또 다른 고문이나 죽음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고문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피고문자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모욕으로, 자격박탈로, 무고(無告)로, 믿음과 신념과 가치와 가족에 대한 잔인한 비방으로 피고문자는 조금씩 약화되면서 과거가 파괴된다.

위의 여섯 가지 범주는 우리가 고문에 의해 야기된 만성적이든,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것이든, 정신질환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상태의 특징은 인간의 내면적인 구조를 파괴하고,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이다. 고문피해자와 고문피해자 사이의 익명성과 불균등한 관계는 하이데거의 'Miteinandersein'과 마틴 부버의 '나와 너' 관계에서 말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만남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사람들간에 상호 영향을 주는 특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 따라서 비록 현재에는 베트슨이 말한 이 중의 구속이라는 개념이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정신병 치료와 가족요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문에 의한 고질적 휴유증으로 관측되고 있는 정체성 및 自尊感의 상실이 고문가해자와 고문피해자 사이의 의사전달 양식을 특징지우는 이중의 구속이라는 요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문피해자들의 치료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증거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허위로 가득찬 고문 당시의 상황이 고문피해자들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깊은 불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trust)와 진실(truth)이 어원학적으로 관련이 있듯이, 신뢰는 진실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했지만 고문은 일시성과 공간성의 주요 측면들을 파괴하거나 왜곡시킨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일관된 자기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전자는 동기의 상실에 이르게 되고, 후자는 이 세상의 고향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재감 상실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고문을 당한 사람은 일종의 정신적 미아가 되는 것이다.

문국진씨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과에 대한 보고

1. ① 1993. 1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
② 원고 소송대리인 :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③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1993기합 76915호
④ 1994. 3. 인사이동으로 담당재판부가 폐지되고, 현재 재판부가 지정되지 않았음
2. 1993.11.18. 10:00 제1차 변론기일이 서초동 민사지방법원 제559호 법정에서 열림.
 - 1) 원고측 : 백승현 변호사 출석
 - ① 소장 진술
 - ② 소견서 증거로 제출함
 - ③ 1986. 문국진씨에 대한 청량리 경찰서와 북부지청의 수사 기록의 송부를 요청함.(채택)
 - ④ 문국진씨에 대한 정신·신체감정을 신청함.(채택)
 - ⑤ 증인으로 문국진씨 어머니 김여옥씨와 치료 담당의사이신 배기영씨를 신청함.(김여옥씨는 채택이 보류됨, 배기영 의사는 채택)
 - 2) 피고측 : 안승환, 조수형, 박동열, 박동을 4인이 국가소송 실행자로 지정되어 앞의 3인이 법정에 출석.
 - ①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서 제출 진술.
 - ② 1986 이후 국가가 보관하고 있던 문국진씨 관계 기록 일부를 증거로 내놓음.(수사기관의 기록행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취지)
 - 3) 2차변론 기일 추후지정(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3. 그후의 경과
 - (1) 1993. 11 수사기록 법원에 도착.
 - (2) 1993. 12. 27부터 1994. 1. 12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남궁기씨로부터 정신신체감정을 받음.
 - (3) 위 신체감정 결과가 1994. 3. 2. 법원에 도착됨
 - (4) 1994. 3월 재판부 인사이동 이후 현재까지도 문국진씨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 1994. 4월부터 현재까지 변론지정기일신청을 3차례 냈으나, 6월 현재까지 변론기일 나오지 않은 상태임.
 4. 신체감정의 내용(별첨)

< 소견서 >

1. 인적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증번호 :

주소 :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 ICD-9) : 298.4.

3. 소견

문국진씨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의 분류기준(DSM-III-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항목이 없어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전 인격, 병후의 일상생활 기능을 보아서 썩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III-R이 ICD-9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분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분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이 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의 Categories 298.0 ~ 298.8은 최근의 생활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작은 군에 제한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편집증적 반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 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됨.

문국진씨의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덴마크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35명 중 101명(74.8%)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의학적 이상 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분열증양(schizophrenia-like) 증상이 있다는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 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제출함.

—— 1993년 9월 13일.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영.

동교신경정신과의원 (333-3572)

고/문/방/지/협/약*

(전 문)

A.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총회는,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제 원칙에 따라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고려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 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또한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본 결의에 부속된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모든 국가 및 효과적인 역량을 행사하는 기타 조직체를 위한 지침으로서 채택한다.

부 속 서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제 1 조

1. 본 선언의 목적상 "고문"이란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이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 기본규칙과 부합되는 범위의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고문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악화되고 의도적인 형태이다.

제 2 조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은 어떠한 것이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을 부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규탄되어야 한다.

제 3 조

어떤 국가도 고문 또는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허용하거나

* 법무자료 제104집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자료집』(법무부, 1988)에서 인용함.

** 1975. 12. 9 유엔총회에서 결의 3452(XXX)로 채택되었으며, 이 선언은 모두 12개조로, 고문방지협약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목인해서는 아니된다.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험,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상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 또는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 4 조

각 당사국은 본 선언의 규정에 상응하여 그 관할권 내에서 고문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법집행 인사 및 기타 공무원들의 훈련에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는 충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상기 금지 내용은 또한 적절하다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개인의 구금 또는 처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밀하여진 일반적인 규칙 또는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 7 조

각 당사국은 제1조에서 정의된 바의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 형벌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에의 가담, 공모, 사주 또는 고문의 미수를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제 8 조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누구라도 관련 당사국의 소관기관에 그 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한 공평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제1조에서 정의된 고문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관련 강사국의 소관기관은 공식적 고소가 없었을지라도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만약 제8조 또는 제9조의 조사결과 제1조에서 정의된 바의 고문행위가 범하여진 것이 확실하다면 국내법에 따라 고문혐의자 또는 해위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만약 고문 이외 기타 형태의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간주되면 고문 혐의자 또는 행위자는 형사상, 징계상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 11 조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행위가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으로 증명되면 고문피해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구제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일체의 진술은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증거로서 원용되지 아니한다.

B.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본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제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수 없는 제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도 유의하고,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 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는 용어는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 또는 제3자가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은 적용범위 더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수 있는 여하한 국제문서 또는 국내입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

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급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 3 조

-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 그러한 근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은 적절하다면 관련 국가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 위반의 고질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 4 조

-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들이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한다.

제 5 조

- 각 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 피해자가 자국민이며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 각 당사국은 범죄 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 있거나 본조 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 6 조

- 자국 영토 내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 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이나 다른 법적 조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형사 또는 인도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 그러한 국가는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 1항에 따라 구금중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인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와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체재하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 일 국가는 본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였을 때에는 동인의 구금사실 및 동인의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제5조 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본 조 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즉각 상기 국가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표명한다.

제 7 조

-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제4조에 언급된 범죄의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동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한다.
- 이 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 제4조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는다.

제 8 조

- 제4조에 언급된 범죄는 당사국들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 조약상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인도조약에 그러한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동 협약을 그러한 범죄들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여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들이 아닌 당사국들간에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인정한다.
- 그러한 범죄들은 당사국들간의 인도목적을 위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물론 제5조 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영토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제 9 조

- 당사국들은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관한 형사상 절차와 관련, 동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재량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에 제공한다.
-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에 따라서 본 조 1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법집행 인사, 민간 또는 군 및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 각 당사국은 이러한 인사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 고문의 금지를 포함시킨다.

제 11 조

-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 12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제 13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고소자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 14 조

-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하에서 인정되는 피해자 또는 여타 사람들의 보상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각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제 16 조

-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여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 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 본 협약의 규정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문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2 부

제 17 조

-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구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키로 원하는 인사들의 지명 유용성에 유의한다.
-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

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최초의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지명국가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당사국에 제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본 조 3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여타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동인의 잔여 임기동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동인의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 당사국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동 지명내용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 후 전 당사국의 과반수가 6개월 이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전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8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b)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초의 본 협약상 위원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초 회의 이후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5. 전 당사국은 본 조 3항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국제연합이 부담한 비용을 국제연합에 변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당사국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9 조

1.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고나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들을 전 당사국에 송부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함께 본 조 3항에 제시한 견해를 포함시킬 것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고나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조 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 또는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동 조사결과 및 정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5. 본 조 1항~4항에서 언급된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를 거쳐 제24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동 절차의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본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통보로서 동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대해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관련 당사국 쌍방에 만족스럽게 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일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보로서 당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운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당해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d)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e) "(c)"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f)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b)" 항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 항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b)" 항에 의한 통보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 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는 사실 관계와 동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ii) "(e)" 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 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본 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 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르고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 당사국에 의한 통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에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의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이거나 그러한 통보 제출 권리의 남용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통보도 본 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제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으며, 동 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 당사국은 통보접수 6개월 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그 구제조치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본 조에 의한 개인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a) 같은 문제가 어떤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b) 개인이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만,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동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통보를 심사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국 및 개인에게 제출한다.

8. 본 조의 제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 한다. 동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타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동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동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의한 또는 개인을 대신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21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

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24 조

위원회는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에 본 협약에 따른 연례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3 부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드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의 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6 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28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따라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 찬성 여부를 예 관한 의견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동 통보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당사국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그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음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을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30 조

-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그들 중 1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본 조 1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조 1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본 조 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1 조

- 일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지 1년 후에 유효하게 된다.
- 동 폐기는 그것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 폐기의 가 유효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는 여하한 문제의 계속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일 당사국의 폐기가 유효하게 된 날 이후에는 그 국가에 대한 여하한 새로운 문제의 심사도 개시하지 않는다.

제 32 조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과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제27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개정안의 발효일자
 - 제31조에 의한 폐기

제 33 조

-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등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본을 모든 국가들에게 송부한다.
-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의 제19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할 최초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의 제19조 1항에 따라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한다.”
 - 아래에 열거한 일반지침은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4월 20일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잠정 채택되었다. 이 지침의 준수는 최초 보

고서가 통일된 형태로 제출되도록 하여 협약 제19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제1부 : 일반적 사항

제1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협약 제1조 1항에 정의된 고문뿐만 아니라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보고하는 국가내에서 금지되어 있는지 및 배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법률제도의 간략한 서술;
- 보고하는 국가가 고문방지협약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가진 국내 법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국제적 문서의 당사국인지 여부의 지적;
- 협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사법, 행정 혹은 다른 관계당사국들이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지적;
-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에게 어떤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 보고하는 국가내에서 협약의 실질적 이행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서술 및 협약에 따라 보고하는 국가의 의무이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문제점 지적.

제2부 : 협약 제1부의 각 조항들과 관련된 정보

제2부는 협약 제2-16조의 이행에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각 조 및 항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조의 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 혹은 기타 조치내용;
-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위한 조치상황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한 모든 정보.
이 보고서 제출시에는 동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한 법률등의 원문의 사본을 공용어(영어, 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중 1개 언어로 작성하여 충분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본들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보고서와 함께 일반적인 배포를 위하여 복사되지 않을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등의 원문이 실제로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거나 보고서 자체에 첨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문 피해자 또는 가족을 찾습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인권운동사랑방내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모금안내

문국진 주택은행 420802 92 104167
국민은행 027 21 0568 670
상업은행 126 08 171760
조흥은행 371 06 147478

한국여대	의회	자료실
1.9	10-1	
95		

22

회/계/보/고

(94.9.25-94.12.12)

수 입	지 출
이월액(9.24)	3,820,760
회비	300,000
	'모임' 1주년 행사 100,000
	제1차 재판 한겨레신문 광고비 100,000
	소식지 8호 인쇄, 발송비 100,000
	오윤자씨(김종경씨) 부인 200,000
	총무 활동비(10,11월분) 600,000
	사무실 사용료(10,11월분) 100,000
	소식지 9호 인쇄, 발송비 100,000
	도츠카 변호사 접대비 20,000
합계	4,120,760
	합계 1,320,000
	잔액 2,800,760

<회비 내주신 분>

백희선	120,000
김익환	20,000
훼드라 아줌마	100,000
안병선	10,000
최창준	50,000
1993.7-1994.12.12까지의 총모금액	25,321,000
총지출액	22,520,240
잔 액	2,800,760

<모금구좌안내>

주택은행 420802-92-104167 국민은행 027-21-0568-670
 상업은행 126-08-171760 조흥은행 371-06-147478
 <예금주> 문국진

- ◆◆◆ 95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씨 제7차 손배소송이 열립니다.
-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94년 송년모임이 12월 27일(화) 오후7시 참여연대 인천운동사랑방(전화: 796-8364)에서 열립니다. 이날은 문국진씨와 함께 송년회를 갖습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제 9 호

발행일: 94년 12월 16일
 발행인: 박 정 기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
 기원빌딩 4층
 전 화: 796-8364

고문이 부활하고 있다

부산에서 고문사건 두건 법원에 의해 확인

최근 부산에서 고문사실이 법원에 의해 2건이나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첫번째 사건은 지난 10월에 발생한 부산 강주영(부산 만덕국교, 8)양 피살사건의 주범과 종범으로 구속중인 원종성(23), 옥영민(25)씨에 대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11월 22일 오후 2시 판사실에서 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고문 당한 사실을 신체검증을 실시해 확인했던 것.

이들은 경찰에 연행된 뒤 40일 만에 실시된 신체검증에서 원 피고에게서는 양쪽 손목에 수갑에 놀려 생긴 명 자국, 왼쪽 무릎 안쪽에 바닥에 비벼져 생긴 상처가 아물어 나타난 흉터가 발견되고 왼쪽 발 두번째 발가락의 발톱 밑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옥씨는 왼쪽 허벅지 중간쯤에 멍이 들었다가 아문 흔적과 왼쪽 손목에 수갑에 놀려 생긴 명 자국, 왼쪽 귀 윗부분과 머리 사이에 자를 넣어 마찰시킨 흔적 등이 발견됐다.

원씨는 이날 신체검증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양팔을 등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도록 끓어앉혀 놓고는 몽둥이로 허벅지를 구타하고 발로 온몸을 밟았으며 수갑이 채워진 손을 아래 위로 움직여 피가 안 통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옥

씨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끓어앉혀 놓고 허벅지를 몽둥이로 구타하고 온몸을 구둣발로 찼으며 왼쪽 귀 윗부분과 머리 사이에 플라스틱 자를 끼워 앞뒤로 움직여 마찰시켜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 피와 구두 발자국이 묻은 것을 현장검증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 입혔고, 청바지는 경찰관이 가져갔다고 말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40일 전인 지난달 13일 새벽에 처음 연행됐을 때 가장 심하게 고문을 당했으며 지난달 18일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경찰관 5~6명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고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11월24일 이 사건의 핵심증인인 이상희(19·동주여전 비서1)씨를 돌연 형사입건해 "증인의 빌목을 잡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북부서는 이씨가 사건 당일 남해경(19·비서1)씨가 유괴에 가담하는 동안 타자시험을 대리로 친 사실이 유괴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과의 교수와 학생들은 이씨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남씨도 같이 시험을 보았다면서 이에 대

1994년 한 해 동안 문국진씨와 가족, 고문후유증 피해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일원진 일동-

해 증언을 하겠다고 하여 피문이 더해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대리시험은 없었고, 만약 대리시험이 있었다고 해도 학교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남씨를 본 조교, 학생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전상조사소위원회 문재인 위원장은 12월 7일 이 사건 관련자 4명과 같은 시간대에 북부서 형사계 강력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6일 동안 함께 지낸 트럭 운전기사 조성제(30)씨와 유치장에서 고문 상처를 목격한 유아무개(38)씨, 이아무개(26)씨 등 3명의 증언을 확보해 공증을 마쳤다.

전상소위가 공개한 공증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11시께부터 1시간 가량 이 사건으로 구속된 원종성(23)씨와 원씨의 선배 육영민(26)씨가 각각 경찰관 4~5명씩에 둘러싸여 한쪽 팔은 위로 한 채 다른 팔은 아래로 해 등뒤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무릎 아래쪽에 경찰봉이 끼워진 상태에서 주먹과 구둣발로 온몸을 무차별 폭행당하고 무릎을 짓밟하는 고문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부산에서 12월 5일 경찰이 함정수사를 통해 20대 목공을 히로뽕사범으로 조작한 뒤 고문을 가해 강도예비혐의까지 뒤집어씌운 사실이 드러난 것.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신창수 판사는 5일 히로뽕을 복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기소된 목공 이승배(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예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자인서는 이씨가 맹장염 수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고문을 당해 머리가 찢어진 상황에서 작성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하고 “검찰에서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던 중 친구가 통증에 좋은 약이라고 건네줘 히로뽕인 줄 모르고 생수에 타 마셨는데 15분 뒤 경찰관 1명과 괴청년 4~5명이 덮쳐 세척제를 물에 타고와 입에 붓는 물고문을 하고 경찰에 연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8일 구속되었다.

이씨에게 히로뽕을 건네준 김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관이 실적을 올리려고 정보원을 활용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직도 꿈틀대는 고문의 망령

재판부가 피고들의 몸을 살펴보고 고문으로 생긴 상처의 혼적을 공식으로 확인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헌히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피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는 더디기 짜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우선 깊은 인상을 준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23일, 한 국민학교 여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의 몸을 정밀하게 검증한 결과 부산 북부서 경찰관들이 그들을 고문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상처를 여러 군데 확인했다. 손목을 수갑으로 누르고, 무릎을 바닥에 비벼 대고, 귀 윗부분과 머리 사이에 자를 넣어 마찰시킴으로써 그런 상처들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난달 10일에 일어난 그 유괴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이 두 20대 청년을 구속하고 난 직후부터 그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나왔다. 한 청년에 대해서는 알리바이와 무죄를 증언하는 사람이 무려 29명이나 나타났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다. 특히 원아무개씨는 그의 아버지가 한 지방의회 부의장으로 상당한 자산가인데도 경찰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혐의자인 옥아무개씨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온몸을 구타당한 혼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가 조작과 고문의 의혹에 휩싸여 있었는데도 경찰은 “알리바이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소했다.

이승만 정권의 특무대와 현병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하여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의 정보·수사기관으로 이어지면서 저질러진 고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남영동’이라고 부르는 경찰의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는 전두환 정권의 물학에 불을 끊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같은 정권이 저지른 김근태·권인숙씨에 대한 고문, 노태우 정권 아래서 일어난 정치범에 대한 가혹행위들은 그런 정권과의 차별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는 없어져야 할 악폐의 칫손가락에 품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피고들이 당한 고문을 직접 확인해서 공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고문의 망령이 꿈틀대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망령이 아니라 홍두깨처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근자에 폭로된 ‘남매 간첩’ 조작설 같은 것은 아직도 정보·수사기관에서 고문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일으킨다.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말이 지금도 절실히 공감을 부르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겨레신문 11월 24일자 [사설]

기획연재 ④

한번 고문에도 평생 고생하는 고문후유증

5. 고문후유증

고문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후유증을 남기게 됨으로써 고문이 인간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고문이 평생토록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은 설령 증상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후유증이 없다해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공포의식과 두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을 남겨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다.

과거에는 고문후유증이 주로 육체적인 후유증으로 많이 남았으나,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또 의학의 발전과 고문반대운동이 발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육체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방식의 고문이 많이 횡행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면 매년 세계의 약 100개국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는 세월이 가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고문이 이런 추세로 변화해가고 있음으로 해서 고문의 증거를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육체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는 법원에서의 증거보전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고문의 증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고문을 받는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은 매우 어렵다. 또, 정신적인 후유증은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 잠복하였다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아무튼 고문의 후유증도 주로 육체적인 후유증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인 후유증은 한 통계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두통, 청력약화, 위장장애, 관절통증 등이 있고, 피부외상, 골절, 탈구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피카나(picana): 피고문자의 젖꼭지, 성기, 눈, 입, 이빨 같이 아주 민감한 부위에 바늘을 사용해 전기충격을 가하는 고문이라는 고문을 받으면 1~2mm의 붉은 반점의 상처군이 남고, 파날가(fanalga): 별바닥을 가격하는 고문방법)로 인해 종아리의 혈관이 파열되어 커다란 혹이 생기는 후유증을 남긴다. 파날가로 인한 다른 증상은 염지발가락의 피사, 다리의 종양, 정맥혈관의 고질적인 기능저하, 보행증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고문시에 자행되는 구타나 공중매달기에 의해 뼈 또는 연조직이 기형화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골절, 척추손상, 척추탈구, 등의 증세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성고문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성기능장애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고문후유증 중에 정신적인 후유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

지각적 증후로는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장애, 독해력 저하, 집중력 약화가 있고, 심리적 증후로는 걱정, 의기소침, 홍분성 공격성, 감정의 불안정, 사회성이 위축등이 있고, 신경성 증후로는 정력의 결여, 불면증, 악몽, 성기능 장애 등이 있다.

“모든 환자(고문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불안, 불면, 악몽……공포, 의심과 두려움 등으로 특정지워지는 정신적 혼란을 아주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고문피해자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외국의 한 연구는 조사대상 135명의 환자 가운데 14%가 ‘정신장애’를 보인다고 하며, 이들 중 39%(8명)는 ‘만성적 기질성 정신병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증세를 전문적으로는 ‘외상후 대뇌 증후군’이라고 한다.

또, 고문을 당한 지 2~6년 된 젊은이들 5명을 뇌단층 촬영한 결과로 뇌위축증상을 보였다고 외국의 한 연구가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육체적인 후유증과 정신적인 후유증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 둘 사이에서는 확연한 경계선이 없다. 고문은 육체적인 후유증과 정신적인 후유증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문후유증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남는 것은 정신적인 후유증이다.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는 경우는 많은 고문피해자들이 보여주듯이 치료를 한다해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기간을 인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피해자나들이 겪는 고통,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누구의 책임일 것인가.

핵심조항 유보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부결되다

지난 12월 7일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우정 의원은 “국가로부터 고문을 당한 개인이 유엔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가입동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고, 유인학 의원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나웅래 위원장과 민자당 의원들은 “고문을 없애자는 좋은 취지가 아니냐”며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우정 의원이 “최근 국민학생에게도 고문을 가해 살인범으로 만든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반발해 결국 법사위의 의견을 들은 뒤 재론기로 하여 일단은 정부가 핵심적인 두 조항을 유보한 채 형식적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려던 의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정부가 유보한 조항은 ‘한 국가의 고문 사실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간섭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간 문제제기권(제21조)’과 ‘개인이 고문을 당한 사실을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청원권(제22조)’으로 이 조항들은 고문을 감시하고 국가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문피해에 대해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조항들로 고문방지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한편, 94년 현재 세계에서 82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임’은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이런 부당한 사실을 알리고 유보조항없이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의견서를 국회외무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냈고, 전화상으로 이런 요청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부당한 방식으로 조약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파탄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생각합니다. 긴급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3. 한국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국제사회에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천명하여 왔고, 작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이의 가입을 천명하였습니다.(생략)

4.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은 첫째로 고문이 범죄행위로 되어 고문이란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형태로 인권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된 점(범죄성의 인정) 둘째로 고문이란 범죄행위의 처벌을 위하여 세계적 형사재판관할제도가 도입된 점(세계적 형사판할의

인정), 셋째로 체약국이 협약상 부담되어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조치로 비밀조사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자료집』, 외무부, 1988, 29쪽 참조) 유엔고문방지협약의 탄생과 국제사회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세계 인권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 그러나, 이번 정부가 가입 유보를 밝힌 두 조항 21조와 22조는 유엔고문방지협약 중에서 고문의 종식을 위한 또한, 고문행위를 감시하고 고문가해자에게는 처벌을, 고문피해자에게는 배상을 하기 위한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조항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청원권은 어느 나라든지 자국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을 국제사회, 구체적으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함으로써 이를 고문방지위원회가 조사토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조항을 유보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고문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는 지속적으로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다시 말해 고문행위를 방조하겠다는 암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말 고문을 행하지 않을 각오라면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얼마든지 제기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고문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고문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고문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밝히고, 고문가해자를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6.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걸맞는 광의의 고문 개념과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국내 형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해서 고문을 근절하고 고문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금번에 유보조항으로 둔 두 조항을 유보하지 말고 가입하는 것만이 국내적으로 고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인권의 용호와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유린국이라는 오명을 셧고 당당하게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인권향상을 위해 힘쓴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1994년 12월 3일

유엔고문방지협약 국회 외무통일위에 긴급의견 보내

12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긴급의견을 보내 핵심조항이 빠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정부의 가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열린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이우정, 유인학, 임채정 의원 등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사위로 사안이 넘겨짐으로써 일단 이번 국회에서 가입동의안을 통과시키려던 정부의 의도가 좌절되었습니다.(3면 참조)

창립1주년 기념 조촐한 행사 가져

지난 10월 13일에는 문국진씨와 회원 10여명이 모여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저녁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조촐하게 ‘모임’이 창립한 정신과 그동안 함께 했던 이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으려던 의도대로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대신 저녁을 나누었고, 저녁 이후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끼리 맥주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문국진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자신이 쓰고 있는 원고 등에 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고문백서 프로젝트 제출

모임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공동으로 ‘고문백서 프로젝트’를 미국 뉴욕에 있는 Funding Exchange에 지난 10월 15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신청하였고, 신청한 프로젝트에는 1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총 프로젝트 신청 금액 2만5천불, 한화 약 2천만원)

이중 일부라도 재정지원이 오면 고문백서를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추진중인 고문백서 사업은 현재 기본적인 1차 자료는 대체로 수집을 끝냈고, 1월부터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고문에 관한 학습을 하고 집중적으로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입니다.

고문백서는 1차로 내년 8월에 80년부터 94년까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재판 진행 경과>

지난 11월 10일 오후2시, 서울민사지법 559호(합의 13부, 주심 최혜리 판사) 법정에서 열린 제5차 재판에는 문국진씨의 모친이신 김여옥씨가 증언하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백승현 변호사는 문국진씨가 발병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맞춰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문국진씨의 모친께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문국진씨가 “청량리경찰서 면회갔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문국진씨 모친께 “당시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경찰이 치료를 주선하여 고맙다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곧 이어 백승현 변호사가 이에 대해 “당시 부모님의 심정에서 아들을 빨리 데려오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고 물어 이에 대해 어머님이 그렇다고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제6차 재판에서는 다시 재판이 95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은 1월 19일의 재판 이후 다시 한번의 재판을 더 가져 1심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백승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별 이번이 없는 한 내년 2월에는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국진씨 외에 다른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정부합동민원실에 지난 6월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윤여연씨가 정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경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진행중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종경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오는 1월 18일 오후 3시에 서울 서부지원 112호에서 제 4차 열릴 재판에서는 김종경씨의 형님 김옥경씨가 증언합니다.

* ‘모임’에서는 문국진씨 사건 재판부에 회원들이 직접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속에 함께 보내는 엽서에 주소와 이름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0.1	6.

2 /

청량리경찰서에서 발병하기까지

60일간의 사건기록

(1986. 10. 12 ~ 1987. 2. 28)

- 청량리경찰서 자수 (1986. 10. 12)
- 청량리서 대공파에서의 생활(10. 12 ~ 11. 22: 40일)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 청량리서 대공파(10. 12 ~)
- 청량리서 유치장(~11. 22)

- 성동구치소(1986. 11. 22 ~ 12. 12 : 20일) 죄수복 착용
- 성동구치소
-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 (10일정도)
-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 (4일정도)
-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독방

-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1986. 12. 12 ~ 1987. 2. 28)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의 생활 (10.12~11.22: 40일 동안의 생활)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취조실에서 조사함. 조사내용은 '1. 백원 담이 어디 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 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전 T방 3개를 얘기했고 79모임방은 얘기를 안했는데 경찰들이 "요 부근 아니냐"는 등의 유도심문을 했는데 이미 그들은 방을 알고 있었다. 본인은 진술서도 한 번 쓴적 없었다고 함.

경찰서 내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3일간 조사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게 했을 뿐이다.

-경찰들이 무언의 겁을 주는 발언들을 하며 석유통을 문국진의 앞에 놓거나 들고 왔다갔다 함. 석유난로는 문국진과 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국진과 정면으로 보이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줌.

-청량리경찰서 과장이 "막대기 30센티미터짜리를 몇개 만들어라" "어 머니한테 가서..." 등의 공포적인 말을 뇌까림.

-그외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으나 자세히 본인은 현재 기억이 안나고 하영튼 경찰측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고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심이 점점 더해갔다.

문국진이 담당경사 김낙현에게 이런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사는 싫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들 놀람.

이후 3일만에 취조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함. 청량리 대공과 내에는 조그만 방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숙직실이었고 1개는 취조실이었다.

일주일쯤 후에 청량리 유치장 독방에 수감됨

부모님이 날씨가 추워(11월말경) 내복을 반입했으나 본인은 입지 않고 있어 형사에게 물어보니 형사가 잃어버렸다고 함, 그래서 나중에

헌 내복을 다시 가져갔음.

부모님이 면회할 때 몸을 자꾸 꼬고 헛소리 했음.

_아무튼 증세가 심하진 않았으나 이상했음.

문국진은 청경 유치장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놈은 괜찮은 놈, 저놈은 안 좋은 놈’ 하며, ‘혁명이 되면 조 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 겠다는 생각들을 힘’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단 도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또 다시 구둣발로 찹.

보름쯤 후 경희대 병원에 의뢰하려 감

그 상태로 보름쯤 있다가 과장의 지시로 경희대 병원에 김낙현과 함께 갔었음.

의사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눈알을 뒤집어보고 성기를 몇차례 움직여본 후 별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보냄. 이때 문국진은 경찰과 의사가 자신의 눈알을 빼고 사지와 성기를 자른 후 전향을 요구하면서 어느 이름모를 매립지에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으로 자신의 육신을 토막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결코 전향은 할 수 없다는 생각만을 하면서 무저항 상태로 있었다고 함.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김낙현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뒤돌아 서서 울었음.

이때 부모에게 경찰들은 문국진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왔다고 했으며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었느냐고 물음.

그후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떤 형사가 “건국대 일(10.28)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문국진이 자수한 후 10일쯤 후부터 건대 학생들이 청량리경찰서에 3,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옴).

유치장 생활 최종 5일간(~11.22) 사복을 입고 있었음.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독방 유치장으로 옮겨짐. 독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음.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음.

성동구치소 (11.22 ~ 12.12: 20일 동안의 생활)

성동구치소 독방생활. 죄수복 입었음. 이때부터 발작이 급격하게 났음.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함. 창살 부수고 자신이 누운 풍을 펴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쏟아버리면서 난동피자 여려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이 복도에다 주전자물을 쏟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해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찼으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음.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10일 정도)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림. 독방에다 가두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칸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붙잡고 서 있었음.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4일 정도)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독방)에 끌려가 꽁꽁 손발 묶이고 온몸도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먼 수건을 뒤집어 씌었음.

문국진은 그 상태로 4일을 조그리고 갇혀서 누어 있었으며 계속 울었음.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독방

그 후로 다시 독방에 갔음.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깼다는 이야기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가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질렀음.

부모가 계속해서 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함.

이후 김상철 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추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12일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에 갑.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 입원(1986. 12. 12 ~ 1987. 2. 28)
검사취하에 있었던 기간임

중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취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검사가 병원에 의뢰해서 관비로 치료받았던 기간임. 그외 청량리경찰서에 있었던 잡범 1명도 같이 중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음.

그후 기소유예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복부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그후 기소유예시킨듯 함.

김낙현은 1993년 8월 중순경 암으로 죽었고 수배기간 때 담당형사 김수일은 현재시경에 근무하고 있음.

〈소견서〉

1. 인적 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

2. 진단명 : 심인정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 (WHO) 의 국제질병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Ed. ⇒ ICD-9 : 298.4.

3. 소견 :

문국진씨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의 분류기호 (DSM-III-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행동이 없어의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전 인격, 병후의 일상 생활 기능을 보아의 측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III-R, ICD-9 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본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본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아 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 의 categories 298.0 ~ 298.8 은
최근의 생활 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자들 중에 제작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 편집증적 반응
은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초래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면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 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정 편집증적 정신병은 「심인정 혹은
~~반응형 편집증~~ 298.3 에 말라된 급성 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정 혹은 반응정
편집증적 정신병.」 으로 정의됨.

문주진 여우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
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 와 의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고문의 학생들을 예비적~~ 렌마크 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 조
사를 따르면, 대상자 135명 중 101명
(74.8%) 에서나 한 가지 이상의 정신학적

이상 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양 증상이 있다는
schizophrenia-like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형(심인성) 편집증
정신병이라는 노력을 제거함.

1993년 9월 13일.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

동교신경·정신과 의원 (333-3072)

진단서 발급 의뢰에 대한 답신

수신 : 변호사 백승현

발신 :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인과

인적 사항 :

성명 : 문국진

성별 : 남자

생년 월일 : 1960년 3월 16일

주소 : 서울시

진단명 : 정신분열증

현재 증상 : 안기부 요원에게 미행당하고 있으며 집안에 도청장치가 되 있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사고, 막스나 레닌에 버금가는 위대한 혁명
사상가가 됬다는 과대 망상, 고문에 못이겨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수면장애, 초조함과 불안에 따른 과민성, 충돌 조절 장애등을 주소로
90년 11월 12일부터 91년 2월 9일까지 입원, 93년 6월 26일부터 현재
까지 본원 신경 정신과 입원 치료중.

발병원인 : 현재까지 연구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등을 들 수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다시 유전성,
생화학적-생리학적 요인(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대뇌 균형의 이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학적 요인, 모자(母子)관계의 결합, 가족간 상호 관계와 의사
소통의 장애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등을 들 수 있다.
환자의 발병은 86년 12월 첫 입원당시 수사과정중 증상이 발생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과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로 보아
심리적 고통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1993년 9월 9일

의사번호: 15580

고려대학 의과대학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인과



18

TEL 963-2383(집) 윤연옥
268-3623(사무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인권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1980년 반공법으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1986년 3월 25일 보임·다산 사건으로 지명 수배되었던
연세대학교 철학과 79학번 문국진씨의 사건 자료로서,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국진씨는 1993년 6월 26일(토)자로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상 규명되어 책임자가 처벌되고
한 젊은이의 한맺힌 청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1993년 7월 7일

문국진의 아내 윤연옥 드림

2학년 때인 1980년 10월경 서대문 시범아파트에 살 때 세벽에 3명(서대문서 형사:현재 치안본부 근무)이 들이닥쳐 문국진을 데려감.

이때 연대 동기인 문국진도 함께 들어온다
조사받고 나옴

곧바로 부모가 따라 갔으나 면회는 못했고,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알아 봤더니 연세대 학생 1명이 프락치 활동을 하여[운동권 학생을 찍어오면 너 (현재 안기부에 근무)는 감시대상에서 풀어주겠다고 함] 이후 문국진은 “프락치가 되느니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기록을 일기 곳곳에 남겼음.

며칠 후 형사가 와 5~6권의 책을 압수해갔는데, 그중 문국진이 연세대 도서관에서 대출한(사회과학에 관련된) 책이 있어 나중에 그의 부모가 도서관측에 1만원 넘는 책값을 지불했음.

부모가 서대문서에 계속 찾아갔으나 면회하지 못했고, 그후 1달 만에 서대문서에서 면회했는데, 그때 문국진은 극히 초췌한 얼굴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애원함.

문국진이 서대문서에 끌려가자마자 서대문서 뒷골목 치안본부 대공과로 끌고가 고문시작, 3일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발가벗기고 쌀가마니로 둘둘 말은 채 무진장 때리기만 함. 하루 종일 맞은 후 저녁에 감방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마받고 새벽이 되면 고문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골방으로 끌려가 무조건 맞음. 치안본부 합재욱의 이름이 일기 곳곳에 나옴.

그 다음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형 주전자로 코에 계속 물을 부음. 이러한 물고문을 여러 차례 당함. 보다 못한 서대문 경사가 이를 말렸음.
현재 치안본부 자리(대공 수사과)에서 조사받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대라는 것이었음.

그 당시 육군소령이 관사(화곡동)에서 운동권 학생을 A·B·C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고, 부모님과 친구인 육사 12기 동기 이상원에게도 고문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지금은 워낙 어려운 전두환 등극 시기라 어쩔 수 없다고 함.

이후 형사는 고문 안했다고 함.
1년 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남. 당시 변화사는 김익보씨였다.
연대 동기들에 말에 의하면 구속 사건이 있는 뒤 술을 마시면 그전과 달리 주사가 무척 심했고,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함.

이 당시 사건의 배경은 보안사에서 노동현장에 대한 조사를 나누자
용 차수본부로 넘김 (보안·다산 사건은 차본에서 조사받음)
구속된 후에는 지역 대장으로 이관시킴 (구속자들은 2년 5월 5%, 4년 5월 2%를 받고
1~2년까지 복역하고 4%)

1986년 3월 25일 '보안, 다산 사건'이란 조직사건으로 신수동에 있었던 보
임(편집디자인 기획실)에서 고경대, 박성인, 김상복, 혜중, 이범, 고성국
등이 잡혀갔고 (3월 25일 새벽), 1, 2일 후 다산(성수동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재차 잡혀가 총 10명 정도 구속되었음.

구속되고 1, 2주일 후 백원담, 문국진이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신문에 조
직사건이 발표됨 (백원담은 1987년 대선직후 수배해제, 문국진은 1993년 헌
재까지 복권 안되었음)

이후 수배 기간 동안 문국진은 부천에 월세방을 얻어 지내다가 주인집의 거
동이 수상하게 생각되어 (신고했을 것이라는 판단) 이사하겠다고 대강 집을
챙긴 후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 서울에 온 후로 이를 동안 천전하다 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전화해 부모와 통화함.

3·25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부모들이 이문시장 근처에 살 때 매일같이 청경형사 10명이 집에 와서 책을
10권 가량씩 가져감.

아버지가 수색영장을 보이라고 하자 3번 만에 영장을 가져옴.

집주인에게 압력을 주어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결국 쫓겨나와 지하 단칸방
으로 이사함. 또한 에딘버러 옷가게로 청경찰이 와서 청경으로 부모를 데려
가 "1달에 얼마씩 돈 대주나"며 유파지르고 수첩을 뺏었고 부모가 이를 날
수첩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내줌.

가게에 대공과 형사 10명 가량이 하루종일 진치고 앉아 영업을 못하게 했으
며 가게를 빼라고 주인에게 압력을 넣음 (가게 주인이 나중에 이 말을 부모
에게 함). 또한 청경 계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을 자수시키면 학교 복학도 시
켜주고 곧바로 내보내 주겠다고 계속 회유했음.

28일
자수한 날 (건국대학교 방화점거농성사건 직전, 10월 말경) 새벽까지도 그
상태도 포위하고 있었음.

문국진은 윤언옥 (지금의 아내)의 집에 이를동안 계속 전화를 하며 자신의
거처를 알렸고 부천에 살던 후배 유호선에게 전화를 해 쫓기고 있음을 알
립.

여관에서 이를밤 (그 사이에도 여관을 몇 번 옮김)을 보내고 낮에는 이화여대
근처 카페로 계속 장소를 옮기며 돌아다님 (본인은 부천에서 거쳐하던 방이
이미 경찰에 알려졌고 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도망을 쳤으며 윤언옥이
문국진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그 방을 찾아갔으나 급하게 도망간 흔적이 역
력했다. 윤언옥은 문국진의 옷 몇 벌 (당시 날씨가 점점 싸늘해졌으므로)을
챙긴 후 유호선의 집으로 가서 전후사정을 알렸다. 이후 주인집 아저씨와
형사에게 미행당했으며, 형사들이 계속 찾아와 집에 들어가지 못했음).

문국진은 이를을 도망 다니다 새벽(4월 26일경)에 전화함. “엄마 나 참을 수가 없어. 나 바깥에 있을 테니까 행길로 나와”. 벌벌 떨며 서있던 문국진 을 집으로 데리고 와 청경에 가서 자수시킴(마침 이때 경찰들이 없었음).

문국진만 남겨두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옴. 청량리서 유치장에 구속된 후 내 복을 들여보냈으나 반입이 안되고 3일 동안 잠을 안자우고 조사받게 함. 조사내용은, 1. 백원담이 어디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이후 형사들이 부천의 거처하던 방에서 책을 2박스 정도 가져옴)

이후 3일 만에 청경에서 집으로 연락을 함. “사람이 이상하니 와서 보라”. 가보니 완전히 돌아버려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 키려고 사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 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함.

문국진은 청경구치소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 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 놈은 괜찮은 놈, 저 놈은 안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함: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 한다”며 또다시 구둣발로 참.

1달 정도 있다가 성동구치소로 옮겨진 후, 이런 상태인 사람을 독방에 가두 어 놓았다. 칸막이로 면회할 때 문국진 뒤에 3, 4명의 경찰이 항상 서 있었고 줄로 풍풍 뭍은 채 면회시킴.

부모가 계속해서 검사(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하자 “알았다”고만 말함.

이후 인권위 변호사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 걸자 검사는 움추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떤 형사가 “건대 일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문국진이 자수한 지 3일 후 건대학생들이 청경 에 3, 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옴).

중간에 정신병원(중곡동정신병원, 청량리정신병원)에 경찰과 갔었으나 의사 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성기를 몇 차례 움직여본 뒤 벌 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냄(이때 문국진은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자를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갑.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한편 북부 검사가 부모에게 각서를 요구(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한 후 부모가 각서를 쓰자 병원으로 보내게 함.

자수한지 1달 반 정도 후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졌으며 곧바로 입원 되고 관비로 담당의사 최용성 씨에게 의뢰됨. 최용성은 서울대 출신으로 같 은 중앙중학교 선배라면서 잘 대해주었고 부모에게 성장과정 등을 물고 “숨 어서 맙이 불안하니까 병이 난 것 같다”고 했으며, 부모가 병든 애를 빨리 빨리 처리하지 않고 병이 날대로 나게 했다고 했더니 의사는 아무 말도 안 함.

청경에 있으면서 문국진이 윤연옥을 계속 찾자 어머님이 자의적으로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자를 시켜 “윤연 옥에게 급한 볼일이 있다. 문국진이 좀 보자고 하더라”며 계속 전화를 함.

이후 윤연옥의 집에 형사가 계속 거주했고, 언니네 집까지 찾아와서 윤연옥을 찾아내라고 읊박질렀으나 윤연옥은 성남에서 현장생활을 계속 했고, 1987년 8월 말경에 문국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한양대 근처 카페에서 이 러한 일이 있은 후 처음 대면함. 그 당시의 상태도 안 좋았으며 자꾸 골목으로 들어갔음. 이후 이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형사들이 너를 미행할까봐 따돌리려고 했다고 함.

1달 후에 만났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며 한 장소에서 오래 있지를 못함. 다음날 운동권 노래책을 갖다주기로 하고 자신의 병실생활을 한번 보라고(당시 외래치료: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서 출퇴근하듯이 하루를 병원에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면서 치료받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입원했다고 함. 그날 윤연옥은 담당의사 최용성을 처음 보았으며, 그의 말로는 윤연옥 씨가 여러모로 문국진 씨의 위로가 되어 치료에 많은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음

최용성 씨는 문국진 씨가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을 할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경을 말함.

이후로 한해에 한번씩 재발이 되었는데, 1989년 입원할 때는 이를동안 잠을 안자 상태로 당시 다니던 출판사에 출근했으며 밤에는 책상에 앉아 손목시계만 들여다 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난폭해져 쿵쿵거리며 방을 돌아다니고 창문을 열어재끼고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해달라고 하며 잠을 못자게 함

1990년 입원할 때는 입원하기 1주일 전쯤 회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 “이 혼하자”고 함. 밤에 들어온 문국진에게 아내가 이혼의 이유를 묻자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조용한 카페로 내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건 나다. 내가 왜 너를 안기부에 보고하겠는가”라고 하자 눈알을 둘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음. 그 상태에서도 진실은 통했는지 문국진은 이혼얘기는 거두겠다고 함. 이후 전화가 도청되어 있으니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했으며,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장소를 옮기며 불안해 함(경찰이 미행한다고 생각함).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목을 조름. 부인은 생후 7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와 피했다. 문국진은 다음날 고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도 활동안 여기가 치안본부냐 나를 고문사킬 거냐 하면서 알갱을 향해 물었다.

* 문국진은 1960년 3.16일 성으로 4살 키인 형이 단분

있으며, 낙태자는 못한 가정이 있으나 부모님들은 여성회 살가는 특성없는 근연한 분들이며(현재 아버님 69세), 어릴때부터 ~~집체. 가족. 동네~~ 때문에 주는 충돌고회를 ~~받았으나~~ 문국진은 15세학장을 하는 등 별 문제 없는 소년기를 보냈음. 고회를 그만둔 것은 대개에 들판에서이며 청소년도 본인의 희망으로 지원한 것처럼 이후에는 만종고회를 간간히 나갔음. 부터 경제까지 (동대문에 있는 청암고회)

1973년 미동국전하고 결급

1976년 3월 중장고회하고 결급

1979년 미동 대개하고 결급

1979년 경기대하고 청소년 ~~교~~ 결급

1983~85 도체한 학자 편집장

1986. 3. 25 보안. 대선 사건으로 전국 시민 50여

1988~89 경제학자. ~~교~~ 결급

***결혼 후 이사할 적마다 관할서에서 1번씩 찾아왔으며 최근 3년간은 직접 찾아오지 않다가(주인집에 근황을 물어봤을지도 모름) 1993년 4월 21일경 청경 보안2계 이문3,1동 담당 홍세균 씨가 찾아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청경에 김낙현 씨(청경 때 담당형사)가 아직 있는데 얼굴 부딪히면 서로 뭇 할 것 같아 자신이 찾아 왔다”며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 문국진이 “수배당하면서 난 병이다. 국보위에서 난 병”이라고 하며 애써 적 개심을 감추자 “비판적으로 살지 마라. 운동해도 좋다. 아개운하다. 개운하다. 한번은 꼭 만나보려고 했다”고 말한 후 돌아감. 그후 이를동안 문국 진은 잠을 자지 못했음.

병명: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인간관계 망상, 편집증.

1980. 3~4월경: 반공법으로 서대문서 구속, 1년 형 2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3개월 만에 나옴.

1986. 3. 25: 다산, 보임사건 이후 수배

1986. 10월경: 청경 자수 구속, 정신질환 발병.

1986. 11월경: 정신분열증으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입원(관비)
1987. 8~10: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재입원
1987. 9. 4 ~ 12. 8: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낮병동 다님

1988. 9. 10: 결혼

1989. 10~12월 초: 동서문화사 3개월 다니던 중 재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재입원.

1990. 2. 28: 딸 출산.

1990. 10~1991. 3, 1991. 11~4: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한울 5, 6 개월 다니던 중 재발)

1993. 6. 26: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

2. -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의 어찌 -

저의 남편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꺼안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앞으로도 구에서 극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드립니다.

저의 남편은 19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1987년 복학, 1988년 졸업한 사람으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다가 받은 고문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생활비는 제가 출판사를 다니며 벌고 있으며, 저희는 4살된 딸아이와 함께 전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993년 6월 26일(토)자로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남편은 이를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집안에 도청이 돼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6월 26일 낮12시경 주인집 손녀딸(6세)이 우리집 아이와 놀기 위해 놀러왔는데 남편은 “너 왜 인형 가지고 갔어. 도둑질하면 나쁜거야. 빨리 갖다 놔”하며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하는 남편이었으므로 저는 놀라 뛰어나와 그 아이를 얼른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화가 난 아이 엄마가 올라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삿대질이 오가면서 흥분한 남편은 장난감 차에 꽂혀 있던 쇠파이프를 빼들고 배란다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인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우선 참아달라며 일을 수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가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흥분이 극에 달해 “나도 신고하겠다”며 유리창을 깨부수었고 손에 상처를 입어 피가 뚲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남의 집 안방으로 피신을 했고, 잠시 후 신이문파출소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남편은 경찰을 보자 더욱 날뛰었고 경찰차 밑으로 몸을 깔면서 “나를 데려갈 테면 데리고 가보라”며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 젊은 사람이 안됐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언로하신 시부모님들은 다만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몸이 노끈으로 꽁꽁 묶인 채 경희의료원으로 실려가 손을 치료받은 뒤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아이가 잘 안 가지고 놀기에 제가 버린 인형을 주인집에서 주워 손녀딸 방에 걸어둔 것이 있는데, 남편은 주인집 고마가 인형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었습니다. 정신이 약하므로 작은 일에도 보통사람보다 몇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자극이 가해지자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연대 철학과 2학년 재학중인 1980년 봄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서적물이란 증거물로 채택되어 반공법으로 서대문서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뒤 1986년 3월 25일 보임·나산 조직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면서 그해 초겨울 부모님과 함께 자수해 청량리경찰서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직후 남편은 자기가 눈 오줌을 먹고, 발가벗은 채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며 광란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형사들은 일부러 미친 척 한다며 독방에 가두고 발병할 때마다 구둣발로 온몸을 맹이 들 정도로 찻습니다. 중간에 경찰관 입회하에 국립정신병원에 간 적도 있으나 의사는 남편을 발가벗기고 침대에 누인채 성기를 몇번 흔들어보고는 아무 이상 없다며 다시 청량리경찰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즈음 전국대 방화농성사건(1986. 10. 30일경)이 터져 경찰서가 바빠지면서 남편은 1달 반 동안이나 그 상태로 경찰서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에 관비로 입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남편이 “숨어서 지내느라 병이 든 것 같다. 머리가 뛰어나고 심성이 부드러워, 사회에 단단히 한몫 할 사람이었는데 안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 재발이 되어 거의 한해에 한번씩 입원을 했는데, 한번 입원을 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입원할 때마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집안에 도청이 되었다. 안기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며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1990년 10월경에 입원할 때도 “안기부에서 나와서 너를 강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을 일일이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보통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피곤해 할 때면 “물고문과 전기고문(90년 입원 때 전기치료를 받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안 당해도 되니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면서 자신과 저를 위로했습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전 남편은 맡수는 적었지만 사려 깊고 유머도 있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 이제 34세, 엄마 아빠의 속정을 느끼가며 한창 예쁜 짓을 하는 천진한 딸아이와 절망하기에도 지친 아내를 두고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면회간 저를 보며 남편은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면서 땡한 눈으로 옵니다.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껴안고 남편 몰래 운 적도 많습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 남편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겪어낼 수밖에 없다고